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관련, 하위법령 마련 필요에 따라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조정(100만원 이하 → 500만원 이하)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행령 제67조(과태료의 부과)

: 변경 없음

나.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개정(안 2.개별기준 바 항)

1) 개정안

(단위: 만원)

현 행					개 정(안)				
위반행위	근거 조문	과태료 금액			위반행위	근거 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바. 법 제3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	법86조 제2항 제4호	50	100	100	바. 법 제3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	<u>법 86조 제 1 항 제 2 호</u>	<u>150</u>	<u>300</u>	<u>500</u>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관광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개정안

관광진흥법령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 (아래 표 중 위반행위 바 항)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
바.*	법 제86조 제1항 제2호	150	300	5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					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				
2 개별기준					2. 개별기준				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
바.*	법 제36조제2항제4호의4	50	100	100	바.*	법 제36조제1항제2호	150	300	500
*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 통역안내를 한 경우					*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 통역안내를 한 경우		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	
연 락 처	(044) 203-2842